

『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성خم제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수규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전기와 통신, 소방시설 공사 등에 있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형 건설사의 공사수급 독식을 방지하며,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개별법령의 분리발주 예외 사유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고, 분리발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

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분리발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이에 분리발주 제도의 예외 사유 상당수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의 대형·특정공사에 해당하고, 이러한 공사가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심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있어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등이 규정한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